

광주고등법원 2020. 2. 14 선고 2019나24321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재판경과

광주고등법원 2020. 2. 14 선고 2019나24321 판결

광주지방법원 2019. 8. 30 선고 2018가합56935 판결

전 문

원고,항소인 A지역주택조합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허경모

피고,피항소인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강희,강철일

변론 종결 2019. 12. 20

판결 선고 2020. 2. 14

제1심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9. 8. 30. 선고 2018가합56935 판결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

피고는 원고에게 2, 500, 000,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제1심 판결의 인용

원고의 항소이유는 제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, 제 1심과 당심에서 제출된증거를 다시 살펴봐도,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.

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, 제1심 판결의 이유부분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L- <<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.

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재판장 판사 김태현판사 윤봉학판사 장진영